반박문의 내용이 문제된 기사가
진실이 아니라거나 편견을 담고 있다는 주장인 경우에는
법정에서의 변론에 관한 기사에 대하여도 반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다

Berlin 지방법원 1991.11 14. 자 판결
-27 O 714/91 사건

적용법조
베를린주 언론법 제 10 조 제 5 항

판결요지
1. 형사피고인의, 그에 대한 재판(변론)과정에 관한 기사에 대한 반박보도청구권이 어떤 법원의 공개된 재판에 관한 충실한 사실 보도임을 이유로 하여 배제될 수 있으려면, 그 반박문이 언론에 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법정에서의 변론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기사에 대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고, 반박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기사가 변론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다.
2. 위와는 반대로, 반박문의 주장내용이 위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거나 또는 편견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(즉, 기사가 법정에서의 변론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) 법정에서의 변론에 관한 기사에 대하여도 반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.

사실개요
피신청인은 B 라는 신문의 편집인이다. 위 신문은 1991. 9. 17.자의 신문에서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하여 기소가 제기된 형사사건 절차에 관하여 보도를 하였다. 그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박문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반박문
귀하는 1991. 9. 17.자 B 신문의 제 1 면 및 제 3 면에서 소위 「베를린 장벽 수비사건」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『우리들은 포기하였다.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총을 쏘아댔다』라는 제목으로 1991. 9. 16. 베를린 지방법원의 변론기일에서 살아남은 탈출자인 Christian Gaudian 의 진술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. 즉 공소가 제기된 국경(장벽) 수비 대원들은 탈출자들이 이미 확실히 탈출을 포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총을 쏘아댔으며, 그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힌 발사도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.
그러나 위 재판의 진행경과에 관한 위와 같은 묘사는, 그것이 본질적인 점에 있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. 오히려 사실은 재판부가 위 증인의 신문 도중에 위 증인은- 그의 위 1991. 9. 16.자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반대로- 적어도 2 회에 걸쳐서 그 이전의 신문과정에서는 2 명의 탈출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마지막 장벽장애물을

넘어 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왜 이와 같이 상반된 진술을 하는가 하고 위 증인을 책망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.
1991. 9. 17, Berlin M.S.

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박문을, 아직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B 신문의 가장 최근 판에 위 문제된 기사가 실린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그리고 위 기사와 동일한 활자로써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대로 보도하여야 할 것이 명령되었다.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였다. 피신청인은 위 기사가 법정에서의 변론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베를린주 언론법 제 10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반박문을 보도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.

판결이유
가처분 명령의 발부를 구하는 신청은 정당하고 따라서 1991. 9. 24.자 결정(가처분 결정)은 인가되어야 한다. 피신청인은 정기 간행물인 B 일간지의 편집인으로서 1965. 6. l5.자 베를린주 언론법 제 10 조 제 1 항 제 2 문(GVBl. S. 744) 및 1990. 9. 28.자 베를린주법의 통합을 위한 법률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박문을 게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. 위 반박문의 게재를 요구하는 행위는 지체없이 그러고 법에 규정된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서 피신청인에게 도달되었다(베를린주 언론법 제 10 조 제 2 항). 신청인은 위 1991. 9. 17.자의 보도에 의하여 베를린주 언론법 제 10 조 제 1 항 제 1 문에서 말하는「기사에 관련된 자」라고 할 것이다. 편견이 없는 평균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, 위 재판과정에 관한 위 기사의 내용은 위 증인 Christian Gaudian 은 그와 그의 친구인 Chris Gueffroy 는 그들의 탈출시도를 이미 포기하였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사격이 계속 가해진 것으로 묘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그리고 이사건 신청인은 베를린주 언론법 제 10 조 제 2 항 제 1 문에서 규정하고 있는, 반박문의 공표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. 왜냐하면 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불완전하고 따라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. 위 불완전한 보도로 인하여, 특히 위 기사의 제목을 문자 그대로 읽을 경우에는 편견없는 평균적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, 증인 Gaudian 과 그의 일행들이 이미 탈출시도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들에게 총격이 가해졌다고 Gaudian 증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인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.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일면적인 묘사를 피할 수 있기 위하여는, 위 증인 Gaudian 이 그 이전의 진술에 있어서는 위와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던 일이 있었음을 이유로, 법원이 그를 나무랐던 사실이 있었음을 언급해 주었어야 했었다.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박문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. 왜냐하면 반박문이 반드시 항상 원문진술에 대하여 정반대되는 내용만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(Löffler, Presserecht,3. Aufl., §11, Rd-Nr. 120 ; Wenzel, Das Recht

der Wort - und Bildberichterstattung,3.Autl. Rd-Nr. 11.70 Hamburg, Arch PR 1972, 100 참조).
베를린주 언론법 제 10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. 왜냐하면 1991. 9. 17.자의 이 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법원의 공개된 재판에 관한 「사실에 충실하지 못한」 보도가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.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이론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언론의 보도가 공개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,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을 때에는 반박문 또는 반박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는 반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. 이에 반하여 반박문의 내용이 위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거나 또는 일방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반박보도청구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반박문 또는 원문기사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하지 아니하고, 반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. 다만, 반박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거나 또는 진실에 반함이 재판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베를린주 언론법 제 10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면, 반박보도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위 절차는 단지 소명에 의한 증거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실체적인 진실은 탐구되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(그리고 이는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므로) 체계위배로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(Löffler a.a.O. § 10, Rd-Nr. 67, Wenzel a. a. O, Rd - Nr 11.33, unter Ablehnungder Entscheidung des OLG Hamburg, AfP 1977, 240 und 279, 361 : Seitz/schmidt/Schooner,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in Presse, Film, Funk und Fernsehen, 2. Aufl. Rd.-Nrn. 271 und 528 참조).
증인 Gaudian 이 재판기일에서 그의 종전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 재판부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점은 피신청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,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베를린주 언론법 제 10 조 제 5 항의 예외사유가 문제로 될 여지가 전혀 없다. 왜냐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반박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거나 또는 반박문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법원에 현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